

문서번호	의약과-4908
결재일자	2015.3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의무담당	의약과장	보건소장		
박수경	오귀환	박윤희	03/05 황원숙		
협 조					

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

2015. 03.

성북구보건소
의약과

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

지역사회건강조사는 『지역보건법』 제 4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) 및 동법시행령 제 4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), 제 5조(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 등)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함.

I

추진 근거

- 지역보건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, 5조
- 통계청에서 승인된 지정통계 : 승인번호 제 11775호

II

추진 배경

- 지역보건법(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)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보건 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,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
-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 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 불가능

III

추진 목적

-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·군·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
-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
- 지역사회 민간-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

	(표본설계분과) 질관리 방안 수립 (질관리 및 평가분과)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(교육홍보분과)		
조사준비 (6~8월)	조사수행지침 개발 조사문항지침 개발 책임대학교 담당자 및 조사원 교육자료 개발 전산지원시스템 오픈	조사팀 구성 조사수행일정 수립 책임대학교 교육 참여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조사대상 가구추출	지역주민 홍보 가구선정통지서 발송
조사수행 (8~10월)	중앙콜센터 운영 조사현장방문 조사완료건 전화점검 (제3기관 위탁)	권역콜센터 운영 조사수행 및 자료전송 조사현장방문 조사자료 모니터링 전화점검결과 재확인 및 처리결과 보고	비상연락체계 운영 중앙 및 책임대학교 조사현장방문 지원
자료분석 (11~12월)	입력자료 오류수정 분석용 DB 배포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교육 표준통계양식 및 작성 지침 배포 조사원수기공모전 개최 (교육홍보분과)	통계분석 시·군·구 통계집 작성	통계집 검독 조사원수기공모전 입선자 시상식
익년 (1~2월)	질관리 평가결과서 작성 (질관리 및 평가 분과) 사업계획서 배포	시·군·구 통계집 발간 질관리 및 평가결과 확인	질관리 및 평가결과 확인
익년 (3월)	결과보고대회 개최	결과보고대회 참여	결과보고대회 참여

■ 기관별 역할

기관	역할
질병관리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기본계획 수립 -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- 조사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 - 전국 시·군·구 표본설계 총괄 수행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지침 작성 - 교육자료 및 홍보물 개발 - 전국자료 분석 및 비교 통계집 발간
	운영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관련 주요 현안 검토 및 심의 - 표본설계, 지표, 질관리, 교육 및 홍보, 자료활용관련 기술 자문
	시·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군·구 보건소 사업예산 배정 -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참여 - 조사수행 관련 행정 지원
	시·군·구 보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책임대학교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- 조사수행 관련 행정지원 (표본지점 확인, 가구선정통지서 발송, 홍보) - 시·군·구 건강통계집 검독
책임 대학교	총괄 대표대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교육 / 홍보 / 대외협력 지원
	권역 대표대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사현장 지원 권역콜센터 운영
	소권역 대표대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 시·군·구 보건소 제출 -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수행 - 조사수행 지원(가구대체, 가구수 조정) - 조사원 및 조사정도 관리 - 자료 분석 및 보건통계 생산

VI

조사 방법

■ 조사 대상

- ▶ 조사지점에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, 조사단위는 가구 (가구조사) 및 가구원(개인조사)임

■ 조사 기간

- ▶ 2015년 8월 16일 ~ 10월 31일

■ 조사 내용

- ▶ 건강행태(흡연, 음주, 운동 및 신체활동 등), 이환, 의료이용, 삶의 질, 보건기관, 사회 물리적 환경 등
- ▶ 전국공통조사 기준, 총18개 영역 173개 조사문항, 139개 산출지표 구성
- ▶ 지역선택지표 수는 전국공통지표 수의 10% 내외 수준에서 유지

<2015년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(안)>

영역	조사문항				산출지표			
	1년	2년	4년	소계	1년	2년	4년	소계
1. 흡연	13	5	0	18	9	5	0	14
2. 음주	7	0	1	8	7	0	1	8
3. 안전의식	10	0	1	11	7	0	1	8
4. 운동 및 신체활동	6	4	0	10	3	4	0	7
5. 식생활	7	0	0	7	5	0	0	5
6. 비만 및 체중조절	4	0	0	4	3	0	0	3
7. 구강건강	10	2	0	12	10	2	0	12
8. 정신건강	5	0	0	5	5	0	0	5
9. 예방접종 및 검진	3	0	0	3	3	0	0	3
10. 이환	32	3	6	41	24	3	6	33
11. 의료이용	2	0	0	2	2	0	0	2
12. 사고 및 중독	2	3	1	6	2	3	1	6
13. 활동제한 및 삶의 질	6	5	0	11	2	5	0	7
14. 보건기관 이용	1	0	0	1	1	0	0	1
15. 사회 물리적 환경	2	14	0	16	2	5	0	7
16. 개인위생	0	6	0	6	0	6	0	6
17. 교육 및 경제활동	6	0	0	6	6	0	0	6
18. 가구조사	5	0	1	6	5	0	1	6
소계	121	42	10	173	96	33	10	139

※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전국공통문항 및 17개 시도별 지역선택문항으로 구성된 전자조사표로 조사를 수행

■ 조사 방법

- ▶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1:1 면접 조사하는 방법

※CAPI :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

■ 조사원 선발 및 관리

- ▶ 조사원 모집, 보건소당 5명 선발
- ▶ 보건소는 모집공고문을 보건소 또는 지자체의 웹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 및 게시하고 선발전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
- ▶ 책임대학 담당자가 조사원 및 조사 진행 관리, 필요시 서약서 및 계약서 작성
- ▶ 질병관리본부 및 책임대학교에서 조사원 교육 실시
- ▶ 책임대학에서 조사비 지급 (소득세 발생)
- ▶ 보건소 사업 담당자가 조사물품(상품권, 조사원복 등) 지급 및 관리
- ▶ 보건소 사업 담당자와 책임대학 담당자는 필요시 관리카드 또는 조사 진행상황부 작성하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원 관리에 상호 협력
- ▶ 조사 종결 후 책임대학은 조사원의 활동기간 및 결과를 각 보건소에 통보하고, 보건소는 조사물품을 수거하여 위탁대학으로 반납

■ 조사수행 및 지원

- ▶ 조사수행 : 조사원, 책임대학교, 보건소
 - 조사대상가구에 선정통지서를 조사 15일 전에 우편으로 통보
 - 가구원 부재 시에는 일시를 달리하여 3회 이상 재방문하고, 이후에도 부재일 때는 조사실패로 보고하고 대상가구 교체
- ▶ 조사지원 : 권역대표대학교, 질병관리본부
 - 표준화된 조사지침 전달 및 조사수행 전반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권역콜센터 운영, 권역콜센터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중앙콜센터 이관 문제 해결,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권역콜센터 게시판을 통해 상담내역 공유

■ 조사자료 질관리 및 검증

- ▶ 조사자료 질관리 : 질관리 및 평가분과, 책임대학교, 질병관리본부
 - 조사수행 단계별 질관리를 위한 책임대학교자체점검표 개발 및 적용 : 조사표와 조사 과정 모니터링 점검
 - 사업의 목적 및 세부 활동에 기초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

- ▶ 조사자료 검증 : 제3기관(전화점검기관), 책임대학교, 질병관리본부
 - 제3기관을 선정하여 조사완료자료의 10%를 임의추출 후 전화점검 실시, 전화점검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책임대학교로 통지
 - 책임대학교는 전화점검 결과 허위조사 및 지침미준수 자료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, 문제조사 자료폐기와 조사원 경고 및 해고 조치
 - 문제조사 자료 조치과정 질관리 평가지표에 반영

■ 조사장비 관리

- ▶ 조사장비 임대 : 장비업체
 - 조사기간 중 신속한 A/S 대응을 위해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기종의 노트북을 선정하고, 지역별로 선정 업체와 임대(계약)를 진행
- ▶ 장비배포 및 조사자료 입력 : 책임대학교, 조사원
 - 책임대학교에서 조사원에게 CAPI 장비를 배포, 조사종료 후 수거
 - 조사원은 CAPI 장비를 이용하여 자료입력, 일일 단위로 전송
 - 책임대학교 담당자는 웹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일일 단위로 조사진행 현황을 점검

■ 자료공표

- ▶ 사군구 건강통계집 작성: '16년 2월까지 완료

VIII

행정사항

■ 협약 체결

- ▶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선정된 책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
- ▶ 책임대학교로부터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체결 전 사전 검토
- ▶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사업목적, 사업범위, 사업기간, 사업비 지급, 보고서 제출, 수행사항 점검 및 다음의 사업일정 포함

《 주요사업 일정 등 》

- ① 협약기간: 2015년 3월○일 ~ 2016년 2월 29일
※협약개시일은 시·군·구의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할 수 있음
- ② 사업 중간보고: 2016. 1. 29까지 제출(2015.12.31.기준)
- ③ 결과보고서 제출(건강통계집 PDF): 2016.2.29까지 제출
※결과보고서 인쇄물(건강통계집)은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(2016.3.31)제출
- ④ 응답자 조사참여 동의서: 책임대학교에서 5년간 보관

■ **소요 예산** : 47,988천원(기: 23,994, 시: 11,997, 구: 11,997)

- ▶ 사회복지보조: 47,488천원
- ▶ 보건소 사업비(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): 500천원

■ 개인정보 관리

- ▶ 개인정보는 종이 등에 기록하거나 인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점검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쇄가 필요한 경우 이용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
- ▶ 책임대학교 담당자, 조사원은 보안서약서를 각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며 보안 서약서는 5년간 보관
- ▶ 질병관리본부는 책임대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개인정보 관리 교육 및 보건소와 책임대학교 현장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실시
- ▶ 전화점검 위탁사업
 - 개인정보는 조사의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전화점검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며 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 2월 29일 이후 일괄삭제
 -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조사내용의 별도 기록 및 PC, 하드디스크, 이동식 디스크(CD, USB) 등 저장장치 보관 금지 끝.